

■ 축산법 시행규칙 [별표 3의5] <개정 2025. 9. 2.>

교육의 일부 면제 대상자 및 교육과목별 면제 시간(제36조의2제2항 관련)

1. 신규 축산업 허가자 의무교육 일부 면제 관련

대상자	교육과목별 면제 시간
「수의사법」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 소지자	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관리: 5시간
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17조의3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	축산 관련 법령: 1시간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관리: 3시간 자율선택: 축산차량 등록요령 2시간
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자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	축산 관련 법령: 1시간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관리: 3시간 축산 환경 관리: 1시간 자율선택: 1시간
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 등록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	축산 관련 법령: 1시간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관리: 3시간 자율선택: 축산차량 등록요령 2시간

2. 신규 가축사육업 등록자 의무교육 일부 면제 관련

대상자	교육과목별 면제 시간
「수의사법」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 소지자	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관리: 3시간
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17조의3제5항에 따른 교육 또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 등록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	축산 관련 법령: 1시간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관리: 3시간

비고: 신규 축산업 허가자 교육을 이수한 자는 신규 가축사육업 등록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.

3. 신규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의무교육 일부 면제 관련

대상자	교육과목별 면제 시간
-----	-------------

「수의사법」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 소지자	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관리: 3시간
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17조의3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	축산 관련 법령: 1시간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관리: 3시간 축산차량 등록요령: 2시간
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자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	축산 관련 법령: 1시간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관리: 3시간

비고: 신규 축산업 허가자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는 신규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의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축산차량 등록요령(2시간)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과목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.